

유럽 주요 해운국가의 해운기업보다 조세부담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유럽 주요 해운국가의 해운기업보다 조세부담 수준이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운기업은 조세체제와 조세부담 양 측면에서 유럽 주요 해운국가의 해운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유럽 주요 해운국가들의 경험 과 본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근의 국제해운환경 하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는 해운정책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이다.

둘째,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는 산업의 고유한 속성상 일반산업의 세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해운세제는 유럽 주요 경쟁국의 해운세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우리 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10. 유엔 集團安全保障體制와 平和維持活動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해사법학과 김 호 춘
지도교수 김 영 구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사회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慘禍를 깊이 반성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증진, 국제적 협력도모와 국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의 場으로서의 기능 등을 지상의 목표로 1945년 10월 24일 유엔을 창설하였다.

유엔은 불법적인 침략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集團的 制裁를 적용하는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집단안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의 안보 이사회에 광범위한 權能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UN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엔의 집단안전 보장체도가 당초의 기대한 만큼 運營되지 못하자 헌장 제6장과 제7장을 조화하여 局地戰의 확대를 저지하고 강대국의 介入을 억제하며 나아가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UN의 새로운 紛爭해결 수단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지배논리에서 벗어나 세계평화라는 共同善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冷戰時代의 평화유지 활동은 군감시단(Military Observer Group)과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을 통해 停戰을 감시하거나 紛爭의 惡化 및 再發을 방지하고 제한된 군사적 성격의 활동이었으나 脫冷戰이후 평화유지 활동은 UN이 紛爭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유지의 중심적 기구로 책임을 行使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로 집행력(Enforcement)을 수반하는 보다 직접적인 강력한 활동 그리고 인도주의 및 선거지원, 국가기반 구축 등의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平和維持活動은 현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UN의 紛爭의 해결 방식 때문에 구속력이 미약하고 민감한 事案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尖銳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의 기본 원칙도 세계평화를 선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시적인 대 원칙에 따라 역사적 慣行을 통하여 발전해온 만큼 엄격한 이론이나 자세한 규범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冷戰時代의 經費規模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되어가고 있으나 UN회원국들의 會費滯納 및 納付拒否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脫冷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엔이 개별국가나 지역적 기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안보, 경제, 환경, 인권, 복지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러한 역할을 국가 간의 문제 해결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요 안보위협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 3세계 국가에서 발생하는 內戰(Civil War), 대규모 인권침해, 難民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 사태를 겪으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다. 또한, 지난 5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사태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 5백여명이 인질로 붙잡히는 수난을 겪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10여명의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시대에 참여한 정치대립의 장으로 전락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와 같은 다양한 분쟁원인들에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한 적법성 확보를 통해 강대국 중심의 자의적인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위상이 보다 강화할 것과 지역안보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UN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그 지역의 정서에 밝은 지역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분쟁예방과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유엔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평화유지활동에서 대두되는 인권침해문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평화유지활동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국제사법심사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11. 船舶衝突에 있어서 過失責任에 관한 研究

해사법학과 이 성 철
지도교수 정 영 석

船舶衝突에 있어서 船舶의 意味는 당해 船舶의 航行能力(ability of navigation)과 船舶의 機能, 目的 등 諸般條件을 검토하여 船舶을 定義해야 할 것이다. 曳船列이 제3자에게 가한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은 현재와 같은 다양한 法理의 展開만으로는 일반성이 결여되며, 被害를 입은 無